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6. 6. 14.>

동부지방산림청

수신자 보상토지 소유자
(경유)
제 목 **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**
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릉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 동부지방산림청)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협의 기간	송달일로부터 수용재결신청 전까지
협의 장소	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-14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
협의 방법	협의장소 방문(대리인 가능)
보상하는 시기, 방법 및 절차	송달일로부터 수용재결신청 전까지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
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	토지 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, 신분증

보상액 명세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 (원래 지번)	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면적 (원래 면적) 또는 수량	보상액	비고
1	강원도 강릉시 교동	402-2	도	㎡	36	10,062,000원	

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

기안자 주무관 이대원 검토자 팀장 김동환 재결권자 과장 이영주
협조자
시행 동부지방산림청- 접수
우 25473 주소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-14 / 홈페이지 주소 http://www.foest.go.kr
전화번호(033) 640-8532 팩스번호(033) 642-8302 / 전자우편주소 zzangdol373@korea.kr / 대국민공개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